

「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」 개정전·후 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
<p>제3조(수수료의 구분)</p> <p>2. 다. <u>투자자문수수료</u> : 회사가 제공하는 <u>투자자문서비스</u>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<u>투자자문재산</u>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</p> <p>제5조(수수료부과절차)</p> <p>④ <u>투자자문수수료</u>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<u>투자자문계약서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⑤ 회사는 <u>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</u> 정한 수수료 및 보수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수수료의 구분)</p> <p>2. 다. <u>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</u> : 회사가 제공하는 <u>투자자문서비스 및 투자일임재산운용에 대한</u>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<u>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</u>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</p> <p>제5조(수수료부과절차)</p> <p>④ <u>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</u>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<u>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⑤ 회사는 <u>집합투자기구,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서</u> 정한 수수료 및 보수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기준은 <u>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</u></p>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21. 11. 15.

개정 2022. 05. 25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아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세칙, 그외 업무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.)와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구분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다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원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
- 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 및 투자일임재산운용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 ④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,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및 보수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(설명의무)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시 및 통보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